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7
----------	-----

2019. 3. 15.(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이상식 의원 등 10명
- 나. 제출일자 : 2019년 2월 26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2월 27일
- 라. 상정일자 : 2019년 3월 7일
 -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식 의원)

가. 제안사유

- 일제강점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안 제5조)
-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의 위탁(안 제6조)
- 기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원(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 안 제3조에서는 기념사업 지원의 적용범위를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충청북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충청북도 출신 독립운동가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으로 독립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추모 사업, 역사적 자료 수입·조사·연구 관련 사업,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이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분단 현실과 이념적 잣대 때문에 감추어지고 왜곡 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왜곡된 독립운동의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됨.
- 또한 상위법인 「국가보훈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 예고 및 해당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도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독립운동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
----------	-----

발의연월일 : 2019년 2월 일

발 의 자 : 이상식·최경천·박형용·육미선

송미애·김기창·서동학·박상돈

심기보·이상욱 의원(10인)

1. 제안 이유

- 일제강점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안 제5조)
-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의 위탁(안 제6조)
- 기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원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예산조치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와 협의

7. 입법예고 : 2019.2.12. ~ 2019.2.21.(10일간, 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가”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충청북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충청북도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2.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관련 사업
4. 독립운동가 발굴에 필요한 학술행사 지원 사업
5.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6.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가보훈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5.22>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통한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

2. 비용 발생 요인

- 독립운동 재현사업, 추모사업,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연구사업, 학술행사,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등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5조
 - 독립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립·조사·연구 관련 사업
 - 독립운동가 발굴에 필요한 학술행사 지원 사업
 -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독립운동 재현사업, 추모사업,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연구사업, 학술행사,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등

나. 추계의 전제

- 2019년 당초예산을 기준, 사업의 추계 및 물가상승률(5%) 고려하여 산출

다. 추계 결과 : 1,730,771천원

라. 재원조달방안 : 1,730,771천원(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독립운동 기념사업	1,730,771	314,780	351,354	353,110	354,876	356,6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314,780	351,354	353,110	354,876	356,651	1,730,771	
국 비	-	-	-	-	-	-	
도 비	314,780	351,354	353,110	354,876	356,651	1,730,771	
시군비	-	-	-	-	-	-	
세 출	314,780	351,354	353,110	354,876	356,651	1,730,771	
독립운동 재현사업	-	15,000	15,075	15,150	15,226	60,451	
독립운동 추모사업	24,140	24,261	24,382	24,504	24,627	121,914	
독립운동 연구사업	-	20,000	20,100	20,201	20,302	80,603	
독립운동 학술행사	70,000	70,350	70,702	71,056	71,411	353,519	
교육·홍보· 학예	121,040	121,645	122,253	122,864	123,478	611,280	
기 타	99,600	100,098	100,598	101,101	101,607	503,004	
재원 조달	314,780	351,354	353,110	354,876	356,651	1,730,771	
의존 재 원	소 계	314,780	351,354	353,110	354,876	356,651	1,730,771
	보조금	314,780	351,354	353,110	354,876	356,651	1,730,771
	지방교부세						

□ 2019년 비용추계 세부내용

1. 독립운동 추모사업 : 24,140천원(임정 기념식 13,000, 경술국치 등 11,140)
2. 독립운동 학술행사 : 70,000천원(충북연구원 40,000, 단재기념사업회 30,000)
3. 교육·홍보·학예 : 121,040천원(충북예총 50,000, 충북민예총 50,000, 독립운동 사진전 20,000, 초중고 사적지 순례 1,040)
4. 기타 : 99,600천원(광복회원 위문품 55,500, 삼일절·광복절 행사 40,000, 애국지사 위문 등 4,100)